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난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정부가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제7조는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경로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으로써 난민인정자의 상위 교육기관 진학 및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15.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학력인정의 기준 등)”을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학력인정신청서에 그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인정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의3까지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이수학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생략)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및 절차)
<u><신 설></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35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학력 인정신청서에 그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인정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의3까지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이수학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

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
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
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
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난민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65